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03

발의연월일: 2020. 7. 20.

발 의 자:정청래·김영주·최혜영

황운하 • 아수진(비) • 권인숙

박성준 • 전혜숙 • 남인순

양이원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.

특히 사학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관할청에 의한 지도·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국 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 상 임원 당연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임원이임기 중 분쟁, 회계부정, 해임요구, 징계 등으로 인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임.

이에 임원이 임기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당연퇴임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2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임원의 당연퇴임) 학교법인 임원이 임기 중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퇴임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2조의2(임원의 당연퇴임) 학교
	법인 임원이 임기 중 제22조에
	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
	<u>당연퇴임 한다.</u>